**골재 공급계약서**

골재업자 (주)○○○○(이하 “갑”이라 칭한다)와 레미콘업자 (주)○○○○(이하 “을”이라 칭한다)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골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

본 계약은 “을”의 레미콘(Ready-Mixed Concrete ; 이하 “레미콘”이라고 약칭한다)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골재의 공급을 “갑”으로부터 제공받고 이와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골재)**

1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매월 ○○○○ ton의 골재를 최소한으로 하여 공급하도록 하며 ton당 가격은 일금○○○원정(\ ○○○)으로 계산한다.

2. “갑”은 여하한 사유로도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“을”에게 공급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염분이 포함된 골재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3조 (대금결제)**

1. “을”은 매월 납품받은 물량을 정산하여 익월 ○○일에 “갑”에게 현금입금 하도록 한다(부가세 별도).

2. “갑”이 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총 연체 금액의 ○○%의 이자가 매 1일당 가산되며 동 기일이 ○○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.

**제4조 (골재 인도)**

1. “갑”은 본 계약에서 정한 최소 물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하도록 하며 추가 물량이 필요한 경우 “을”은 ○○일 이전에 통지하여 공급받도록 한다.

2. “갑”은 채취한 골재를 “을”이 지정한 사업장에 공급·인도하며 운반비는 “갑”이 부담한다. 단, “을”의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골재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제반 위험부담은 “갑”이 부담하기로 한다.

**제5조 (납품골재 크기)**

“을”은 “갑”이 지정한 크기(○○○○)의 골재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“갑”이 이를 검수하여 당해 굵기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골재를 납품한 경우에는 반입의 거절 및 재 반입을 통지한다.

**제6조 (납기 지연)**

1. “갑”이 지정된 기일에 골재를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1일당 총 주문대금의 ○○%에 해당하는 지체이자가 가산되며 “을”은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결제 지급한다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(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지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제1항의 납품 지연이 ○○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“을”은 기 지급한 주문대금의 전액 반환 요청과 동시에 납품인수를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

**제7조 (인수 거절)**

“갑”의 지정된 납품에 대하여 “을”이 정당한 사유없이 골재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이 기 지급한 결제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거절한 골재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. 단, “갑”은 의무 이행에 소요된 경비를 별도로 “을”에게 청구한다.

**제8조 (계약기간)**

1.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로 한다.

2. 제1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○○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○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
**제9조 (우선 공급권)**

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여타 제3의 골재 공급처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량을 충원하도록 하며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가격의 등락에 무관하게 계약상의 단가로 공급한다. 다만, 가격의 등락이 최초 계약시보다 ○○%이상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당해 단가를 반영하도록 한다.

**제10조 (해지)**

1.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) 가압류, 가처분, 경매개시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

2) 파산, 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

2.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○○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.

3.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
**제11조 (기타사항)**

1.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.

2.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.

3.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.

**제12조 (분쟁해결)**

1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원칙적으로 “갑”과 “을”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.
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“을”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.

**제13조 (특약사항)**

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“갑”과 “을”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,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.

1.

2.

3.

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, 각각 서명(또는 기명)날인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.
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(“갑”)

상호 : (주)○○○○

주소 :

대표이사 : ○○○ (인)

(“을”)

상호 : (주)○○○○

주소 :

대표이사 : ○○○ (인)